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2일, 최형두의원 등 2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형두의원)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내 나노팹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명확한 법률적 정의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는 삭제하고, 기존의 “나노팹센터”의 기능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다.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 라.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 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 국가나노기술인프라 정의 삭제 및 용어 수정 필요
 - ‘국가나노기술인프라’는 안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구체화되므로 별도 정의는 불필요함. 또한 ‘국가나노기술인프라’는 그 용어상 시설·장비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 행위의 주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나노팹 연계 강화 및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은 연구시설의 확충보다는 활용 촉진에 가까운 내용으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적용 시 법인격이 없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하여는 소속된 법인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법인에 소속된 부설기관이나 특정 부서가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속된 법인이 대부계약 등의 체결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특례 적용 대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가 중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규정 필요
 -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적용 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기관이 이 법에 따른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도 같이 적용받게 되므로 법률 적용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공공나노팹센터로 수정하고, 연구시설 확충에 관한 조문에서 나노팹의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조를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적용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는 사업 수행 주체임을 고려하여 공공나노랩 센터로 수정하고, 정의를 삭제하며, 나노랩 연계 강화 및 나노랩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은 연구시설의 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이므로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적용 대상의 법인격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문구를 수정하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가 중복되는 경우 법률 적용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둠.

수정주요내용

가. 국가나노기술인프라 용어를 공공나노랩센터로 수정하고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및 제11조제2항).

나. 나노랩 연계 강화 및 나노랩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함(안 제11조의2).

다. 공공나노랩센터 외에 공공나노랩센터가 소속된 법인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의3).

라.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나노기술 인프라”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장비의 구축·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안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 정부는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지정된 기관”을 각각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양여·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대부·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2. (현행과 같음) 3. “ <u>국가나노기술인프라</u> ”란 정부가 <u>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나노팹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 1.2.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생략)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u>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 센터를 지정하여</u>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팍센터를 구축·운영한다.

③ 정부는 나노팍센터의 인근 지역

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국가나노기술인프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장비의 구축·운영 경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나노팍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을 중심으로 나노
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
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④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국
가나노기술인프라
와 국내 나노팹
등을 연계하여 나
노기술 관련 연구
개발 시설·장비
의 공동활용을 촉
진하는 나노팹 서
비스 통합정보 시
스템을 구축·운
영하고 이를 위하
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국
가나노기술인프라
와 나노팹들 간

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
라 한다)-----

-----.

<삭 제>

<삭 제>

연계·협력을 촉진
하고, 제4항에 따
른 통합정보 시스
템을 구축·운영
하기 위한 전담기
구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 정부는 나노팹
의 공동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나
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
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나
노팹의 공동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
여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공유재산
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
례) ① 지방자치단
체는 국가나노기

③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나노팹
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지
원 및 제2항에 따
른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
한 전담기관을 지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나노팹 서비스 통
합정보 시스템 구
축·운영 및 제3
항에 따른 전담기
관의 지정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
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
례) ① -----
---공공나노팹센

유하는 토지를 사
용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13
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
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
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
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노기
술인프라로 지정
된 기관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

④ -----
---공공나노팍센
터 또는 공공나노
팍센터가 소속된
법인-----

는 토지를 매입하
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37
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
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

-----.

⑤ 공유재산의 사
용허가·대부·양
여·매각에 관하
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저촉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매각의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법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u>제2조(공유재산의</u> <u>사용·대부에 관</u> <u>한 적용례) 제11</u> <u>조의3의 개정규정</u> <u>은 이 법 시행 전</u> <u>에 다른 법률에</u> <u>따라 사용허가를</u> <u>받거나 대부계약</u> <u>을 체결하여 이</u> <u>법 시행 당시 그</u> <u>사용허가 기간이</u> <u>나 대부 기간이</u> <u>종료되지 아니한</u> <u>경우에도 적용한</u> <u>다.</u>
--	---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나노팹센터”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장비의 구축·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 정부는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양여·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대부·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생 략)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 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 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 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팍센터를 구축·운영한다. ③ 정부는 <u>나노팍센터</u>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나노팍을 운영하 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팍센 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장비의 구축·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나 노팍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된 공공나노팍센터(이하 “공공

런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나노팍센터”라 한다)-----

-----.

제11조의2(나노팍의 공동활용 촉진)

① 정부는 나노팍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팍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팍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팍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팍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팍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나노팍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신 설>

·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

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나노랩센터 또는 공공나노랩센터가 소속된 법인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양여·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대부·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